



# 국제환경문제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 I. 1998년



노응희 / 본협회 이사

20세기를 「경제의 세기」라 하고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라 부르고 있는 독일의 와이쯔젝커(Ernst Ulrich von Weizsaecker, Erdpolitik, 1990) 교수는 그 세기적 변화의 출발점을 1988년으로 보고 있다. 북해의 바다표범이 폐죽음을 당하고 미국과 중국에는 체온을 넘는 열파가 몰렸으며 캐나다, 소련에는 한발이 계속되는가 하면 방글라데시에서는 대홍수가 국토의 5분의 4를 수침시키고 2,400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4,500만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는 등 이상현상이 지구적으로 속출

된 것은 1988년이였다. 그리고 서베르린에서 개최된 IMF·IBRD의 총 회장에 수만명의 각국에서 온 환경 NGO와 학생들이 개발도상국(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등)에 대한 개발용자가 환경파괴와 개발난민(development refugee)을 발생시켰다 하여 현지주민의 복지를 무시하고 선진국의 경제적이익에 치우친 경제협력방식에 항의데모를 한 것도 이 해 9월의 일이었다.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국가에서의 환경NGO의 데모가 크게 일어난 것도 이 해의 일이다. 그러나 특기할만한 일은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이 해 9월 27일에 일어났다. 구소련과 영국의

지도자가 환경문제에 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뜻하는 중대발언을 같은 날 한 것이다.

「공해는 자본주의국가의 산물」이라고 주장해 온 사회주의 국가의 종주국인 소련의 슈바르나제외상이 유엔총회에서 「UNEP를 지구생태계보전을 위한 유효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사회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고, 「서독 녹색당이나 환경보호론자들은 사회주의 앞잡이」라고 비난해 오던 영국의 대처수상이 영국과학아카데미인 Royal Society(왕립협회) 만찬회에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지한다. 안정적인 번영은 환경이 보호된 세계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자연의 균형을 지키는 것은 20세기말의 위대한 배전이다」라고 연설하였다. (이리해서 그녀는 UNEP의 Global 500 수상자로 되었다.) 그리고 독일의 콜수상은 경제정상회담의 의제로 열대우림 문제를 상정시키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선거전에서 환경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 해 1988년이였다. 고르비가 UN에서 지구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이념대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천명한 것도 이해였다. 이 해의 세계언론매체는 오존 홀이나 지구온난화, 열대우림 문제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그 결정판은 TIME지의 보도였다. 타임지는 1989년의 신년호 표지에 올해의 유명인(man/women of the year)으로 사람대신 올해의 혹성(planet of the year)으로 끈으로 묶여진 지구를 실어 1988년의 유명인이 지구였음을 밝히고 지구환경문제의 특징을 다루었고 Scientific American지는 89년 9월호 전부를

지구규모의 환경문제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이리해서 1982년 UNEP 창설 10주년을 기념하는 나이로비회의에서 그 설치가 의결된 WCED가 1987년에 발간한 보고서 〈Our Common Future〉(일명 Brundtland 보고서)의 제창에 따라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범지구적으로 채택하기 위한 UNCED를 브라질의 리우에서 지구정상회담의 형식으로 개최할 것을 UN이 결정한 해는 1989년이였다. 아무렵 우리나라는 격변하는 국제정세를 깨닫지 못한채 타협없는 논의로 지난날의 청산을 위해 정력을 소비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국제감각의 색맹과 타협의 음치라는 자신의 불구를 자각못한채 지금도 어리석게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II. 침묵의 봄

환경보전의 역사는 길다. 중국은 기원전 21세기경인 하우시대에 이미 봄철 3달동안은 나무 자르는 것을 금하고 여름철 석달동안은 고기 잡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썼으며, 주문왕은 3천년전에 이미 천연동물원을 만들어 오늘날의 자연보호구와 같은 방법으로 동물을 보호했고 순자는 2천2백여년 전에 이미 자연자원을 낭상시키는 것을 공환이라 물을 보호했고 간자는 2천2백여년 전에 이미 자연자원을 난양(남벌, 남협, 남채)시키는 것을 공환이라 하여 공해란 말의 근원을 제시한바 있다. 우리나라의 송금법도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송금법도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연보호나 환경보전을 체계적으로 생각하게된 서구문명이 몰고온 부작용이 심각하게 노출되기 시작한 20세기에 들어와서의 일이다.**

자연보호나 환경보전을 체계적으로 생각하게된 것은 서구문명이 몰고온 부작용이 심각하게 노출되기 시작한 20세기에 들어와서의 일이다. 굴뚝을 높여 오염물질을 확산시키는데 머물렀던 대기보전대책을 발생원에서부터 오염원을 삭감시키도록 바꾸게 만든것은 4천명이상의 인명을 앗아간 런던 스모그사건(1952년) 이후의 일이었고 화학물질만능사상에 브레이크가 걸린것은 농약사용으로 오염된 자연문제를 파헤친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카슨(Rachel Carson) 여사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 출간(1962년)된 뒤의 일이었다. 인쇄된 책을 모두 사들이고 무의미한 유회책으로 언론을 침묵시켜서 침묵의 봄이 몰고올 충격에서 벗어나 보려고 한 화학공업회사의 덧 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책이 베스트 셀러가 되어 미국의 환경정책에 일대변혁을 가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터이다. 미국의 알 고어 부통령은 14세 어린나이에 이책의 초판을 읽는 어머니로부터 환경문제를 배웠다고 밝히고 있다. (Al Gore, Earth

in the Balance, 1992)

DDT를 위시한 농약의 사용이 금지되고 합성세제는 연분해성의 것으로만 제한되었으며 국가환경정책법(NEPA, 1969년)을 위시한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1970년), 수질정화법(Clean Water Act, 1972년) 등 총 1만3천에 이르는 법률, 정령, 구속력을 지닌 판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청(EPA)을 설치(1970년)케 하였고 단순한 산악회(Sierra club)나 동물애호단체(NWF, National Audubon Society)들을 전국적 환경보호단체로 성장시키고 지구의 벗(Friend of the Earth) 등 새로운 많은 환경단체를 만들게 한 침묵의 봄의 파급효과를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때에 거의 신앙에 가까운 자세로 경제성장제일주의를 신봉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외국의 변신에는 무관하게 환경과 경제는 trade off 관계에 있다고 믿는 나머지 환경문제의 거론자를 국익에 반하는 자로 낙인 찍으며 뒷날의 값비싼 댓가지불이 따르리라는 예견조차 못한채 공해성장에만 전념해 왔었다.

이러한 자세는 1972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UNCHE)의 대응에도 일관되었다.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당시 보사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이 회의에 참여했으나 이들은 출발 전 어떤 언론사(동양방송, 중앙일보)가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주최한 국내 환경회의에 아무도 참석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톡홀름회의에서 돌아온 후에도 인간환경선언의 채택, 세계환경의 날의 제정, UNEP

의 창설등에 대해 일체 언급함이 없었다. 이리해서 국민들은 다시 한번 환경문제에 대한 자각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정부의 지속가능적성장정책은 지속되어 지금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댓가를 계속 키워 나갔다.

### III. 독일의 DSD사

유럽의 환경보호 발상에는 2가지 기원이 있다. 야생생물보호와 심각한 대기오염이 그것이다. 60년대에 이미 활발한 운동을 전개한 세계야생생물기금(WWF)과 뒤늦게 출발한 그린피스(Green Peace)의 활동은 지구규모의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충분하였다. 그리고 60년대말에 이미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등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화학물질의 과잉사용은 68년의 학생데모가 유효한 정치적수단임이 밝혀진 뒤 이를 본받아 데모행진을 통해 각국의 환경정책을 탄생시켰다. 프랑스는 유럽 최초의 환경부 설치, EC전역에 대한 환경정책의 발의, EC환경행동계획의 작성요구(72년 당시 EC가맹국은 6개국이고 다음해 3개국이 가맹예정) 등 가장 선진적자세를 취해왔다. 독일 네덜란드는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1963년에 대기보전법을 제정하는 등 환경정책에 나선 독일의 경우 7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기보전법이 제정된 뒤 6년이 지난 1969년이 선거전에서 「루우르지방에 푸른 하늘을」이란 선거캠페인을 벌인 당시 야당의 당수였던 브란트(Brant)가 정상들의 조소대상이 되었음도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

러나 브란트는 연방정부계획으로 환경보호를 최우선시킨 최초의 수상이 되었고 연방환경계획(1971년)을 비롯해 연방발암물처리법(72년), 연방배출물규제법(72년), 합성세제법(75년), 연방수질관리규제개정법(76년), 연방폐수과징금법(76년), 연방자연보호법(76년) 등 5년 사이에 18개의 중요한 환경입법을 제정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정치가였다. 70년대초의오일쇼크를 계기로 경기가 침체되자 근교에 경제계와 환경계의 대표자들을 소집해서 의논한 후 새로운 환경정책을 도입하려는 이니시이티브를 전혀 잡지 않은 슈미트(Helmut schmidt) 수상과는 대조적이었다.

1982년 연방회의선거에서 녹색당이 의석을 차지하게 된것은 삼림의 사멸에 대한 시민의식의 발로라 하겠으나 이렇게 환경보호에 대한 열기가 식은듯하던 슈미트정권 이후에도 나름대로 독일은 환경정책의 고전적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일을 수행했다. 그 하나는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지방정부가 중앙의 지원아래 환경행정을 확립시켰다고 하는 환경행정의 지방분권화이고 그 둘째는 이른바 고연돌정책(회석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수정했다는 점이다. 수질보전분야의 배출기준은 1975년에 이미 채택되었고 대기오염분야의 통일적배출기준은 1982년에 정부의 정책으로 되었다. 그리고 체르노빌속 직후인 1986년에 창설된 연방환경부는 EC와의 유대아래 광범한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93년 1월부터 포장재폐기물을 전면규제하여 개개의 제조업

자나 판매업자에게 소비자로부터 포장재의 회수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전국적 회수나 리사이클에 필요한 비용·인적자원을 개개의 기업이 부담하기엔 벅차고 또한 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잡다한 물질로 구성된 포장재를 리사이클하기에는 기술적 지식이 부족하였다.

이리해서 포장재의 주요사용기업 약 400사를 중심으로 90년 9월에 설립한것이 DSD(Dual system Deutschland) 사였다. 각 개별기업은 자사제품에 대한 포장재의 회수나 리사이클업무를 모두 DSD사에 위탁기로 한것이다.

① DSD사는 동사의 심사를 통과한 관련기업과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업은 포장재의 용량에 따라 요금을 DSD사에 납부한다. ③ DSD사는 계약기업에게 「그린포인트」(Green Point)의 이용을 인가하고 기업은 이 마아크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④ DSD사는 각기업이 납부한 요금을 재원으로 처리시설의 건설비나 회수인건비에 충당한다. ⑤ 마아크가 붙은 포장재는 DSD사가 각처에 설치한 오렌지색 컨테이너로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93년 3월에는 리사이클의 대상으로 자동차나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시킨 「순환경제법」이 각처에서 결정된바 있어서 리사이클 유관기업부문에서는 독일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듯 하다. 이 밖에 환경 마아크제도의 도입, 운영, 소매점에서의 비닐주머니의 폐지, 세제의 무인화 등 독일에서의 환경운동은 본받을만한 것이 많다고 하겠다.

#### IV. EU의 환경행동계획

금년부터 EU로 불리는 EC의 전신은 1057년에 설립된 EEC다. 6개국(독, 불, 백, 이, 화, 룩셈부르크)이 설립한 EEC의 목표는 경제성장이었다. 따라 환경문제는 관심이 없었다. 이들이 환경에 관심을 보인것은 1973년에 제1차환경행동계획을 9개국이 채택한 때 부터였다. 최선의 환경정책은 발생원에서 오염을 방지시켜야 한다는 원칙이 이 때 채택됐다. 이리해서 EEC 설립조약 제 2조에 명확한 목표로 규정되어 있던 경제성장은 환경보전을 전제로 해야한다는 수정이 가해졌다.(91년의 마스트리히트 정상회담에서 이 제2조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의하여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령이라는 법적수단을 통해 환경정책이 추진되었다. 물론 이 지령은 EC 규칙과 마찬가지로 직접가맹국에 통용되는 법률은 아니다. 가맹국은 일정기간내에 지령을 국내법으로 전환시킬 의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실시방법에는 각국의 재량의 여지가 많다. 다만 EC시민개인에게 국가, 지역, 지방기관등이 그 실시를 태만하는 경우 EC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이를 강제하고 있다.

EC의 환경행동계획은 5개년계획이다. 제1차환경행동계획(1973-76)부터 이에 따라 마련된 EC 환경정책에 관한 중요한 지령은 다음과 같다.

제2차환경행동계획(73-76)에 따른 지령

- 합성세제에 관한 지령

**리사이클 유관기업부문에서는 독일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듯 하다. 이 밖에 환경마아크제도의 도입, 운영, 소매점에서의 비닐주머니의 폐지, 세제의 무인화 등 독일에서의 환경운동은 본받을만한 것이 많다고 하겠다.**

(73/440/EEC)

- 지표수에 관한 지령(75/440/EEC) (수질에 관한 3개 분류기준설정)
- 위험물질의 물환경으로의 배출에 관한 지령(76/464/EEC)(위험물질의 블랙리스트와 그레이리스트 작성)
- 육탕수질지령(76/160/EEC)
- 폐기물처리의 골격에 관한 지령(75/442/EEC)(기본적인 처리시설의 기준 설정)
- 가솔린중의 납에 관한 지령(76/661/EEC)
- 소음지령의 발본적개정(73/350/EEC)

제2차환경행동계획에 따른 지령

- 유독 위험폐기물지령(78/319/EEC)
- DDT금지 등을 정한 농약지령(79/117/EEC)
- 화학물질에 관한 신지령(79/831/EEC)(제6차개정이라 불린다)
- 아황산가스와 부유입자상물질(SPM)에 관한 지령(80/779/EEC)
- 대기중의 납의 허용농도에 관한

지령(82/884/EEC)

- 음료수에 관한 지령(80/778/EEC)
- 야생조류와 그 생육지 보호에 관한 마료지령(79/409/EEC)
- 소음지령의 개정
- 고래 가공품의 수입제한에 관한 규칙(81/348/EEC)

### 제3차환경행동계획(82-86)에 따른 지령

- 세베소지령(82/50/EEC)(대규모 공장재해의 방지와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조치)
- 위험물질의 물환경으로의 배출에 관한 지령에 따른 몇가지 자매지령.(예컨대수는 82/176/EEC, 84/145/EEC), 카드뮴 83/153/EEC, 린덴과 헥사크로로시크로헥산 84/491EEC)
- 음료품의 용기에 관한 지령(85/339EEC)
- 유해 위험폐기물의 월경반출에 관한 지령(84/631/EEC)
- 하수오니에 관한 지령(86/278/EEC)
- 대기중의 이산화질소에 관한 지령(85/203/EEC)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지령(85/501/EEC)
- 가솔린중의 납에 관한 신지령(85/210/EEC)(EC 전역에 무연가솔린의 공급을 요구)

### 제4차환경행동계획(87-91)에 따른 지령

- 유럽환경청의 설립에 관한 결정(90/1210/EEC)
- 대규모연소플랜트에 관한 지령(88/609/EEC)(아황산가스 배출량을 1980년을 기준으로 2003년까지 58% 삭감해서 산성비를 감소

시키는 것이 목표)

-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지령(90/313/EEC)
- 유전자가 조작된 생물의 신중한 방출에 관한 지령(90/220/EEC)
- 도시폐수지령(91/271/EEC)
- 농업에서 나오는 질산염에 관한 지령(91/676/EEC)
- 폐기물처리의 골격에 관한 신지령(91/165/EEC)
- 환경마크 규칙(92/880/EEC)
- 식물 동물 서식지에 관한 지령(92/43/EEC)

이상은 1992년말까지 채택된 중요한 지령이거나 12개의 가맹국으로 늘어난 EC가 제4차환경행동계획의 책정교섭을 하고 있던 1987년에는 이미 EEC설립조약은 단일 유럽의정서로 개정되어 있었고 환경보전에 관한 새로운 장이 조약속에 신설되도록 합의되어 있었다. 제4차환경행동계획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가맹국은 현행 환경보전법을 완전하게 실현할 것. 질소비료, 차세대농업, 일반경지 보전 등에 관한 농업문제, 유전자가 조작된 물질의 신중한 방출, 환경과 고용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한 경제적수단의 개발, 화학물질의 크로스 매디아 어프로우치, 정보공개와 환경연구 등에 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1992년 후반에 제5차환경행동계획(92-96)이 채택되었는데 이 계획의 타이틀은 「지속가능성을 향해서」로 되어 있다. 이제 환경정책은 오염관리나 거주환경보전이라는 고전적정책에서 벗어나 지구적 시각에서 새 출발을 하게된 것이다. 91년 1월 마스트리히트에서 합

의된 새로운 조약수정은 환경보호의 필요가 다른 어떠한 EU정책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마스트리히트조약 제3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던 경제성장의 절대불가침성은 화려한 무대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우리는 이산화탄소배출을 규제코져 하는 결연한 EU전략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콜롬부스의 아메리카 「발견」 500년제가 서구인들이 지난날을 자성케 한계기가 된 것처럼 400년에 걸쳐 지구상에 뿌려놓은 서구인들의 교만과 횡포가 몰고 온 결과인 지구환경문제는 서구인이 그 해결을 담당해야할 무거운 책무의 하나이고 그 보다도 저질른 죄과를 보상해야할 부담의 하나이고 서구인의 역사적책무라는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서구인의 한 사람인 와이즈제커교수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음미해본다.

## V. 일본의 환경기본법

1977년에 OECD는 일본의 환경정책을 평가하면서 일본은 공해선진국에서 공해방지선진국으로 탈바꿈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공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운동, 언론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OECD, Environmental Policy in Japan, 1977) 패전 후 황폐화된 국토에서 태풍으로 인한 홍수등 자연재해가 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동안 그들은 산림보호와 같은 환경자원의 관리가 필요함을 배웠고, 60년대의 고도성장기에서 「농료의 바다가 원념의 바다」로 바뀌는 것을 보며 오염물질의 농축운반과정을 담당하는 매체로서의

자연을 배우게 되었다. 수후병, 이타이타이병, 서일포서식병 등 법정공해병의 피해자 구제 제도를 세계 최초로 마련하고 SOx, NOx, 수은, 카드뮴, 연, 비소등 중대한 공해문제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의 환경기준을 세계에서 가장 엄하게 제정하는 노력을 하였고 에너지나 담수 등 일차원절약기술, 탈황·탈질 등의 공해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의 배기가스규제도 10분의 1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1975년의 공해방지투자는 1조엔에 달해 전설비투자의 17%에 이르는 세계제1위였다. 미국에서 머스키법이 제정되었을 때 미국의 자동차업계는 수백명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의 시행을 뒤늦춘데 대해 일본의 자동차업계는 고도로 유능한 기술자 수백명을 고용해서 기술적으로 이를 해결해 세계 제1의 자동차왕국이 되었다는 세평을 받을 정도로 저력을 보였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OECD가 지적한대로 중대한 오염손실을 일으키고 난 후에 뒤따른 주민들의 격렬한 공해배대운동과 여론이 있었고 공해재판과 자치단체의 행정 지도를 통해 사업자와의 「공해방지협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 열의를 바탕으로 정부나 기업이 대책을 마련하게 된데서 얻은 것이었다. 주민운동, 언론, 지방정부의 역할이 공해방지에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1991년 4월 일본의 경단연은 11개분야 24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구환경헌장을 채택했다. 이에 환경문제에 관한 경영방침의 명확한, 사내체제의 정비, 환경부하저감목표의 설정, 환경영향에 대한 대응,

기술개발, 사회와의 공생,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한 대응등이 규정되어 있고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이 지켜야 할 환경보전에 관한 「열가지 환경배려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약 70%의 기업이 현장의 취지에 따른 구체적행동을 펴나가고 있다한다.

1993년 11월 일본은 3장 45조로 구성된 환경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일본이 제정한 13번째 기본법이다.(교육기본법 1947, 원자력기본법 1955, 농업기본법 1961, 재해대책 기본법 1961, 관광기본법 1963, 중소기업기본법 1963, 임업기본법 1964, 공해대책기본법 1967, 소비자보호기본법 1968, 교통안전대책기본법 1970, 심신장해자기본법 1970, 토지기본법 1989 등이 그것이다. 다만 공해대책기본법은 본법의 제정으로 폐지됨) 일반적으로 기본법이란 국정의 중요한 분야에 대한 제도나 정책에 관하여 기본적 방침을 명시하고 기본적 정책의 방향을 밝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기본법은 헌법과 개별법을 연계시켜 주는 것으로서 형식적효력은 일반법률과 같아서 상위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대상분야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월하는 성격을 지니고 다른 법률을 유도하는 관계에 있다.

오늘날의 환경문제가 지구규모라는 공간적넓이와 장래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시간적 넓이를 지닌 과제로 되었음을 반영하여 본법은 그 법익이 세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것으로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3대기본이념으로 환경의 혜택의 형수와 계승, 환경에 대한 부하가 크지 않은 지속적 발전

**400년에 걸쳐 지구상에 뿌려놓은  
서구인들의 교만과 횡포가 물고  
온 결과인 지구환경문제는  
서구인이 그 해결을 담당해야할  
무거운 책무의 하나이고 그  
보다도 저질른 죄과를  
보상해야할 부담의 하나이고  
서구인의 역사적책무이다.**

이 가능한 사회의 구축, 국제적 협조에 의한 지구환경보전의 적극적 추진을 들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환경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경제적조치, 환경부하를 저감시키는 제품등의 이용촉진, 환경교육·환경학습, 민간의 자발적활동의 촉진, 정보의 제공 국제협력, 감시·관측,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등의 활동등에 관한 새로운 시책을 밝히고 6월 5일 환경의 날로 정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본법의 제정과정에서 논란된 각종의견중 일본과 독일의 법안을 비교한 의견만을 소개하면 <표>와 같다. 본법의 제정은 G7 중의 유일한 아시아국가인 일본이 축적된 환경보전기술과 자금부담능력을 바탕으로 지구환경분야의 국제적리더십을 잡아보려는 주목할 만한 의도를 담고 있다. 환경마살팔렌을 제창한 미국부통령 알 고아의 책에도 자금 기술부담논의는 공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표〉 일·독 환경법안비교

항 목	일본의 법안	독일의 법안
법적용의 범위(지구환경)	◎	×
동(자연·회복)	○	◎
동(경관)	×	○
환경권	×	○
자기감사와 공개	△	◎
환경관리계획	○	○
환경영향평가	○	◎
동(주민참가)	×	○
PPP에 따른 부과금	○	○
동(지구부권)	△	○
환경보호이사·책임자	△	○
정보공개	△	◎
환경책임·배상	○	○
NGO의 승인	△	◎
동(원고적격)	×	◎
입법과정의 공개와 토의	△	◎
국제적인 공해책임	△	○

공본현일, 지구ミットとアジア·일본의환경문제, 1994

## VI. 환경과 무역과 제3세계

무역과 관련되어 환경이 문제로 되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① 유해폐기물(PCB, 방어성합유 물질)이나 지구적가재(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따른 환경이동문제

② 환경기준격차에 따른 환경정책과 무역마찰

③ 지구공유자원의 오염

④ 남북 문제와 유관한 환경마찰 등이 그것이다.

①의 경우는 GATT 제20조의 일반적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제한할 수 있고 국제조약으로는 바젤협약과 워싱턴 조약이 있다. 다만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reach)의 문제가 있다. 일국이 자국의 환경정책을 타국에 강요해서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인용하는 문제이다. 돌고래

나 바다거북의 보호를 위해 미국이 자국기준에 어긋나는 기준을 쓰고 있는 나라로부터의 참치나 진주와 같은 천연생산물의 수입에 제한을 가하는 예이다. 이는 GATT의 규정 어긋난다. 그러나 환경보호의 대상이 지구적 시야에서 본 관심사일 때에는 이 역외적용을 전적으로 부정하기 힘든 점이 있고 조약비가 맹국의 프리 라이더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적절한」 역외적용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의 경우는 국제무역시장에서의 공평한 경쟁조건(level playing field)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하여 환경덤핑(ecological dumping) 문제로 무역마찰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이는 환경기준이 엄한 나라의 업자로 하여금 기준을 완화시키거나 상계 관세의 도입 또는 보조금에 의한 오염비용의 대상을 요구하게 만든다. GATT의 참치 패널(Tuna Panel)

은 미국의 역외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기준의 격차를 시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국제적 협조라는 틀 안에서 원칙적 합의를 얻는 길이고 이때에 필요한 기준은 오염자부담의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으로 평가되고 있다. 리우선언이나 EC단 일유럽의정서등은 모두 이 3P원칙의 채택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3P원칙이 국제적합의를 얻었다해도 각국의 환경기준은 세계정부가 없는 현재로서는 동일해질 수 없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기준의 격차로 생기는 무역활동의 왜곡화(비관세장벽, 비교우위구조의 불안전화등)를 시정하고 환경기준이 느슨한 나라의 환경정책은 일정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③의 경우는 환경오염이 국경을 넘어 다국간의 문제로 되거나 지구 규모로 확산되는 경우이다. 오염의 가해국과 피해국이 분명한 경우는 있으나 오존층의 경우처럼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지구공유자원(global commons)이라고 하지만 소유권을 보면 공해나 대기의 경우를 논의로 한다면 대개 소유국의 주권 아래 있는 자원이다. 그리고 개도국의 경우 지구적가치재로서의 삼림보호는 경제발전(소득수준의 상승)과 귀중한 트레이드 오프관계에 있다. 따라서 삼림소유국의 수출목재의 가치가 다른 나라에 있어서 별립하지 않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차액은 무순 형태로던 간에 보호될 필요가 있다. 환경스왑(environmental swap)나 피해자부담의 원칙(victim pays principle)이 요구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열대우림보호를 정부원조

(ODA등)와 링크시키는 「환경 스왑」에 대해서 환경내셔널리즘의 입장에서 환경식민주주의라는 비판이 있으나 이제는 열대우림이 소유국의 국민을 포함해서 세계전체 인류에게 지구가치재로서의 유용성이 인정된다면 환경코즈머플러티니즘의 입장에 서야할 것이다.

④의 경우를 보면 남측의 개도국은 수출무역에 차지하는 1차산업의 비율이 높고 그 생산은 자연환경의 이용, 때로 생태계의 오염과 직결되어 있는데서 생기는 경우이다. 북측 공업제품은 자연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비교적 생태계에 무관한 생신품을 수출하는데 비해 남측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일차상품의 수출에 비교우위를 갖는 경우가 많다. 브르트란트보고서(제 10장)는 머지않아 남측 국도는 북측사람들의 실질적인 폐기물의 쓰레기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북으로부터의 공해수출과 남측 스스로 오염천국(pollution haven)을 이유로 유치한 해외투자으로 남에는 오염생산업이 집중되게 마련이다. 이리해서 세계적환경정책은 남측의 경제적빈곤, 불공정한 소득분포, 특권적정치체제등이 수정됨에 없이는 그 빛을 보기 힘들게 된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는 심각하다. 종의 절감, 토양유실, 삼림파괴, 사막화 등 지구규모의 환경파괴는 그 90%가 개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개도국 도시지역의 오염현상도 그 대책의 미비로 인해 악화될대로 악화되어있다. 이 원인은 개도국이 위치한 기침대와 같은 자연조건도 있지만 그 대부분은 문명구조적조건에 연유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빈곤에서 벗어나 보려는 개발목표는 전통적인 생존유지경제를 극복하고 서구화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물질적소비를 유발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었던 생활유지경제에 머무르는 것은 빈곤이나 후진성의 상징으로 보는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개발욕구를 자극하였다. 이러한 개발욕구를 부추켜 환경파괴를 조장한 것은 선진공업국가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이었다. 이들의 원조는 공업화, 기술교육, 에너지공급, 교통체계등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개발계획 지원과 국제분업이란 이름밑에 자행되는 무역불균형은 이들을 더욱 가난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를 심화시켜 나갔다. 대규모댐이나 도로건설은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주민이라는 개발이민을 발생시키는 인권문제까지 일으키고 천연자원의 수출에 크게 기여한 교통수단의 파장은 세계시장에 이러한 수출품의 공급과리 현상을 몰고와 가격하락을 통해 또 다른 피해를 주었다. 자원채굴이나 공업화, 관련하부구조의 정비등 「근대적」구조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고 환경파괴라는 관점에서 소비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개도국의 지배층은 이러한 개발을 통해 정치적업적 평가나 부의 축적을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브르트란트 보고서는 1985년경부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연간 총액 400억불이 이전해 갔다고 밝히고 있다. 그 대부분은 채무상원 그것도 자본상원은 극히 일부이고 이자지불이라고 한다. 이 액수는 개발원조를 포함한 선진국으로부터

## 종의 절감, 토양유실 삼림파괴, 사막화 등 지구규모의 환경파괴는 그 90%가 개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터의 자본이전총액을 공제하고난 수치임을 유의해야 한다.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아젠다 21」의 실시에는 연간 약 6,0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중 1,000억달러는 공업선진국이 부담하도록 되었다. 이 천억달러는 OECD전개방국의 GDP총액의 0.7%에 해당한다. 이 정부개발원조(ODA) 자금의 앞으로의 지원채용은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엄격하게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비만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 VIII. 서구문명의 유산

역사적으로 보아 서구문명은 중국,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문명보다 뒤늦게 출발했다. 아프리카의 명장 한니발이 코끼리 군단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었을 때 북쪽에서 그가 만난 부족의 문명은 현재의 아마존·인디오와 유사한 발전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유럽은 문명의 창시자는 아니었지만 전세계에 그들 특유의 문명을 확산시킨 영광과 책임을 아울러 지니지 않을



**서구문명의 핵심적 논리에  
어긋나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이론대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일대변혁을  
가하지 않는 한, 그리고 90%의  
개도국인구가 이에 동참해 주지  
않는 한, 우주선 지구호에서의  
인류의 생존은 한계에 온 것이다.  
전근대적이라는 이름아래  
버려왔던 우리의 전통을  
되살리는 길만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친 인류의 다가올 한계를  
성장시키는 길**

수 없게 되었다. 웨스트팔리아조약으로 30년종교전쟁을 끝맺은 유럽은 세계에 눈을 돌려 패권주의를 자행하였다. 위대한 체험가의 뒤를 따른 유럽의 선교사와 개척자들은 그들의 눈에 비친 미개하고 비문명적인 야만인(원주민)들을 정복해가며 세계에 그들의 문명을 보편성이란 이름밑에 파급시켜 나갔다. 종교 군대 식민회사 유럽어에 의한 통치가 그 정복을 보장했다. 19세기 말까지 이들의 정복아래 습복하지 않은 아시아국가는 한, 일, 중, 태정도였다. 그러나 찬란한 문명의 역사를 지닌 아시아도 탈아인구로 부국강병을 꾀한 일본을 필두로 과학과 기술, 군대와 국가조직, 경제학과 유럽형의 진보사상을 받아들여 이제 정체로 밖에 보이지않는 전통은 차례차례 삭감시켜 나갔다. 미션 스쿨, 병원과 농장, 광산, 철도와 자동차, 연과 나이프, 알코올과 에이즈, 밀과 옥수수, 불도지와 주유

소, 편의점과 슈퍼마켓, 케찹과 콜라, 햄버거와 피자 등 모두 유럽문명과 뒤이은 미국 문명이 보급시킨 것들이다. 원주민을 학살하는 잔치성은 개척자정신으로 찬양되었고 영웅적행동으로 존경받았다. 그러고도 학교 병원 교울행정의 보급에 자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 서구문명이 한계에 왔음을 깨닫게 되었으니 그 계기는 바로 기계론적 자연관이 몰고 온 환경문제이다. 이제 그들이 보급시킨 문명덕으로 전세계적인 환경파괴가 진행되어 자연과의 공생이 힘들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것이다.

세계인구의 상위 10%만이 농료를 구가하는 현재의 소비수준을 유지하는데도

- 거의 1,000톤의 토양이 매초 흘러가 버리거나 침식되어가고
- 3,000평방미터의 삼림이 초당 사라져가며
- 매일 10종~50종의 동식물이 감종되어 가고
- 초당 약 1,000톤의 온실효과가스를 대기중에 방출하고 있어서 (Lester Brown et al. 1989-1992. State of the World) 나머지 90%의 세계인구가 상위 10%의 소비수준을 원하는 경우 지구가 파감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A. Toynebee나 그의 스승 O. Spengler가 일찌기 Faustianman syndrome을 경고했을 때 문명에 대한 성찰을 게을리한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일이었다.

이렇게 환겨문제는 문명사적의미를 지닌 중대한 문제이다. 이제 비중율이라는 서구문명의 핵심적 논리에 어긋나는 ESSD 즉 환경과 경제의 통합이론대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일대 변혁을 가하지 않는 한, 그리고 90%의 개도국인구가 이에 동참해 주지 않는 한, 우주선 지구호에서의 인류의 생존은 한계에 온 것이다. 개항기 130년동안 서구화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살아 온 우리도 이제 망각했던 정신문화의 소중함을 되살려서 물질의 풍요가 행복의 근원이 아님을 자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근대적이라는 이름아래 버려왔던 우리의 전통을 되살려야 하겠다. 이 길만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친 인류의 앞날에 다가올 한계를 성장시키는 길이고 그것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의 자각과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으로 되돌아가는 오직 하나밖에 남지 않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임을 깨달아야 하겠다.